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안 제13조의7조)

-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조)

-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

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7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규제 특례 부여 등의 절차 및 기준) 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의 변경,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규제 특례 심의 지원) ① 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제 특례 주관기관과 규제 특례 관련기관 간의 의견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하는 등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규제 특례 신청 및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규제 특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른 경우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이나 권고 등을 요청한 경우 의견이나 권고 등을 받는데 걸린 기간은 제13조의3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7(규제 특례 부여 등의 절차 및 기준)</u> 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의 변경,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제16조의2(규제 특례 심의 지원)</u> ① 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제 특례 주관기관과 규제 특례 관련기관 간의 의견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하는 등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규제 특례 신청 및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규제 특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른 경우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이나 권고 등을 요청한 경우 의견이나 권고 등을 받는데 걸린 기간은 제13조의3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연 락 처	(044) 200 - 2415